

4. Kinship and succession in China, Japan, and Korea

- 동아시아에서 친족관계와 계승의 문제
-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부터 유교적 부계주의(patrilineality)가 확립됨. 장자상속의 원칙. 형제 상속의 배제. 아들이 먼저 사망 시 손자가 상속. 딸은 혼인시 지참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속에서 제외함. 같은 친족 내 혼인 금지.
- 왕위계승에도 부계주의의 원칙이 적용됨. 외척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러한 유교적 부계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음.
- 일본의 bilateral kinship. 701년의 大宝律令과 718년의 養老律令에 따르면 아들과 딸의 왕위계승을 인정. 동족결혼 인정. ‘double royal succession’: 황실의 피를 부모 양자로부터 모두 물려받는 것.
- 이후 중국의 유교적 부계주의 모델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일본의 왕위계승과 귀족가문의 상속은 엄격한 장자상속의 원칙을 따르지 않음. 그러다가 13-15세기에 귀족 엘리트 가문을 중심으로 중국식 장자상속제가 점차 정착되기 시작함.
- 16세기 이후 ‘家(ie)’의 등장. 친족관계를 시발점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넘어서는 집단. 家의 수장의 선택에서 혈연관계 뿐 아니라 능력주의의 원칙이 적용됨. 도쿠가와 막부 계승의 사례.
- 한국의 경우 초기에는 양자 상속이 인정됨. 왕위계승에서도 장자상속 이외에도 형제상속이 자주 발생. 특히 신라의 골품제.
- 한국에서 부계주의가 양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확립된 것은 17세기. “One of the most rigid patrilineal systems known to ethnography” 딸과 서자의 상속권 배제. 서자를 상속권으로부터 배제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부계주의와 차이를 가짐.
- 조선의 왕위계승. 장자 상속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경우가 오히려 소수에 속함. 이와 함께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한 경우 대비나 왕대비의 설정이 이루어짐. 4차례에 걸친 강제적인 왕의 퇴출.
- 특히 15-16세기에는 장자상속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태종, 세조, 중종 이외에도 정종, 세종, 성종 등은 장자 계승이 아니었음. 예종의 사후 그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예종의 형의 차남인 성종이 왕위에 오름. 후에 광해군 역시 마찬가지. 18-19세기에는 왕-아들 상속이 매우 드문 현상이 됨. 사회 전반의 ‘유교화’ 이후에도 조선의 왕위계승은 예외적인 부분으로 남음.
- 이러한 ‘불규칙적’인 왕위계승은 이를 중국에 어떻게 고지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발생시킴. 세조의 왕위계승은 명나라가 몽고와의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넘어감. 그러나 중종반정, 인조반정의 경우 그리고 차서자였던 광해군의 경우 중국은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문제 삼음.
- 조선은 명의 수락을 위해 상황을 둘러대기도 하고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또한 중국 서적의 조선에 대한 잘못된 기록의 수정을 위해 노력함. 兩朝從信錄, 皇明通記 등과 같은 책에서 인조반정을 ‘찬탈’로 기록한 것을 두고 이를 수정할 것을 청정부에 요청. ‘오랑캐’ 청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 청의 왕위계승. 능력주의의 원칙을 따름. 황제의 여러 아들들에게 여러 임무를 맡겨 시험한 뒤 황제가 최종적으로 후계자를 낙점.